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39
------	------

2025.04.24.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03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5년 04월 02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25.04.2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가. 제안이유

-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규제 관련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는 규제개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규제총괄관’의 자격기준 등 위촉에 관한 사항

2. ‘규제총괄관’의 업무, 수당, 해촉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문구 정비 등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준석)

1. 개정조례안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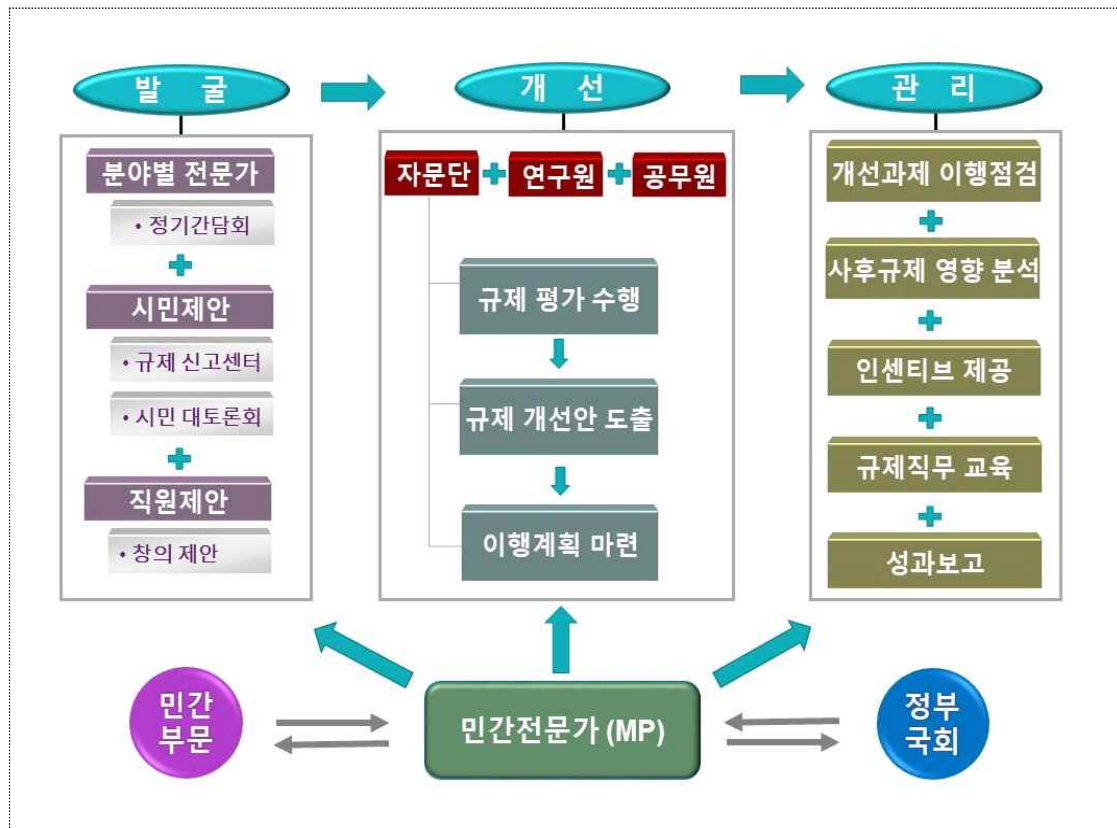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관련 규정의 일부 문구를 정비하고, 규제 관련 민간전문가인 ‘규제총괄관’의 위촉 근거와 자격 기준, 업무, 수당, 해촉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됨.

2. 규제총괄관의 신설 경위 및 기능

- 서울시는 제2기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라 촉발된 각국 간의 관세전쟁 여파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등 국내외적 경기침체 요인으로 인해 수출과 국내소비에 어려움이 예견되자 시장 주재의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규제개혁’을 제시하였음.
- 이후 서울시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개최(2025.1.14.)하고, 서울시정에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하는 ‘시민 집중신고제’와 ‘규제철폐 100일’을 운영(2025.1.3. ~ 4.12)하여 123건(4.12.기준)에 이르는 규제철폐안을 발표하였음.
- 이와 함께 서울시는 규제철폐안에 대한 후속 조치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규제철폐 관련 사무를 총괄 중인 기획조정실 내에 3급 상당의 “규제혁신 기획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제출하였음.
- 또한 신설되는 규제혁신기획관에 법무담당관에서 담당하던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관련 업무를 이관받고, 불필요한 규제의 발굴-개선-관리에

이르는 규제개혁 업무의 전 과정에 대한 자문과 민간 및 정부·국회에 대한
 가교 역할을 하는 민간전문가인 “규제총괄관”의 위촉 근거를 마련하고자
 동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임.

< 규제개혁 업무 흐름도 >



3. 주요 내용별 검토

(1) 규제총괄관 규정 신설에 따른 총론 규정 개정 등(안 제1조~ 안 제3조)

- 안 제1조는 종전의 “규제시책”이라는 용어를 “규제정책”으로 하고,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는 조례의 목적에 “그밖에 서울
 특별시 규제개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있음.

- 또한 안 제2조와 안 제3조를 신설하여 각각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기본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u>규제시책</u> 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u>서울특별시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u>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규제정책</u> ----- ----- 제3조 제3항에서 정한 사항과 그밖에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에 필요한 -----.
<신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를 따른다.
<신설>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규제를 조례·규칙 등에 규정하는 경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2를 따라야 한다.

- 일반적으로 정책이란 공공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결정한 행동방향을 의미하고, 시책이란 그러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또는 수단과 같은 하위 개념을 뜻함.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이 “규제시책”을 “규제정책”으로 변경한 것은 동 조례가 심의·조정·정비하는 대상이 종전보다 확대된 것을 의미하며,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 역시 관련 용어를 “규제정책”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참고한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서울시는 법 제3조제3항¹⁾에 따라 설치한 규제심사기구로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를 두고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규제의 등록·공표, ▶규제

1)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범위)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동 조례에 “규제총괄관”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그 밖에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한 것임.

- 그리고 이러한 추가 사항으로 인해 위원회 관련 조문의 해석에 혼란이 없도록 일반적인 위원회 조례의 입법례와 달리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및 기본원칙(안 제3조)을 신설하고 있음.
- 다만 안 제3조(기본원칙)는 시장이 규제를 조례 또는 규칙에 규정할 경우에는 법에 따른 규제 법정주의(법 제4조), 규제의 원칙(법 제5조),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법 제5조의2)을 따르도록 한 것이나, 법에서 이미 이러한 원칙이 명시되어 있고, 그 밖에도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면 다소 불필요해 보임.
- 한편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조례의 목적과 성격을 확대한다면 조례명 역시 “서울특별시 규제개혁 기본 조례” 등으로 변경하거나 동 조례 외에 별도의 규제개혁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법령 및 조례의 체계정당성²⁾ 확보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2) 규제개혁위원회 관련 규정의 문구 정비(안 제4조~안 제12조)

- 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는 규제개혁위원회 관련 규정의 문구를 보다 명확히 정비한 것임.

2) 개별 법률규정이나 개별법은 다른 법률규정 및 법률과의 관계에서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되어야 한다는 원칙

현행	개정안
제2조(설치 및 기능) (생략)	제4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구성) ① -----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위원 중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② ----- ----- 시장 -----.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 3급 이상 공무원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과 시정의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 ----- ----- ----- ----- ----- 말는다.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신설>	제6조(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위원 의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 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 에 따른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략)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 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 ----- 위원장 중 행정1 부시장이 미리 -----.
제5조 ~ 제7조 (생략)	제8조 ~ 제10조 (현행 제5조부터 제7조까지와 같음)
제8조(간사) ① (생략)	제11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과장(당 당관)이 된다.	② ----- ----- 말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 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 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먼저 안 제4조는 규제총괄관 관련 규정이 조례에 추가됨에 따라 규제개혁 위원회와 규제총괄관의 설치 근거가 혼동되지 않도록 조 제목을 “규제 개혁위원회 설치 등”으로 변경하였음.
- 다음으로 안 제5조는 서울시 소속 각종 위원회의 구성시 기준이 되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를 따르도록 인용 조례를 명확히 하고(제1항), 시장의 약칭(제2항)과 어색한 문구(제3항)를 정비한 것임.
- 그리고 안 제6조는 현행 조례에 누락된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관련 규정을 추가한 것이며, 안 제7조는 동 위원회가 민간인과 행정 1부시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음에도 직무대행의 선임 조건과 주체가 명확하지 못했던 점을 보완한 것임.
- 이 밖에 안 제11조는 동 위원회 간사 관련 규정의 어색한 문구를 정비 하고, 안 제12조는 동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의 수당 지급 근거를 보다 명확히 명시하였음.
- 이상의 개정 사항은 인용조례를 명시하고, 문구를 정비한 수준으로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3) 규제총괄관 관련 규정의 신설(안 제13조~안 제17조)

- 안 제13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규제총괄관의 위촉 근거와 업무, 임기, 수당,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임.
- 먼저 안 제13조는 규제총괄관의 위촉 근거와 자격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자격기준 중 제1호와 제2호는 정부(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의 규제혁신

전문가 채용 기준을, 제3호부터 제7호까지는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제개혁 위원회 위원 자격을 참고한 것으로 보임.

개 정 안
제13조(서울특별시 규제총괄관 위촉)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의 전략수립과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이하 “규제총괄관”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규제총괄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민간(기업·언론·연구기관·교육기관·시민단체 등)에서 규제 관련 업무에 전문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규제 관련 석사·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에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규제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변호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5. 사회·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었던 사람
7.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한편 규제총괄관 위촉 근거를 살펴보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전문가 조례”)를 통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전문가에게 서울시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의 자문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그동안 서울시는 ▶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사업’ 수행을 위한 총괄계획가, ▶서울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자문 및 감정을 수행하는 고문변리사, ▶「건축기본법」에 근거한 총괄건축가 등을 위촉하여 시정의 각 분야에서 전문성 있는 자문 등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법리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규제총괄관의 자격기준 중 민간인 출신에게 적용되는 제1호 및 제2호는 정부 규제혁신전문가에 비하여 경력기준이나 학위기준이 하향되어 있으며, 퇴직공무원의 자격기준(제6호)은 정부 기준보다 필요 직급은 상향되었으나

구체적인 경력기준이 미흡함.

< 정부-서울시 규제 관련 민간전문가 자격기준 비교 >

정부 규제혁신전문가 자격기준	서울시 규제총괄관 자격기준
◦ 민간경력 기준 - 민간(기업·언론·연구기관·시민단체·교육기관 등)에서 <u>규제 관련 업무에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u>이 있는 자 - 규제정책 관련 <u>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u> 관련 직무 분야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 공무원 경력 기준 - <u>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u> 중앙부처 퇴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포함)으로 <u>관련 직무분야에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u>이 있는 자 - <u>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u> 지방자치단체 퇴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 포함)으로 <u>관련 직무분야에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u>이 있는 자	◦ 민간경력 기준 - 민간(기업·언론·연구기관·교육기관·시민단체 등)에서 <u>규제 관련 업무에 전문적으로 근무한 경력</u>이 있는 사람 - 규제 관련 <u>석사·박사학위 취득 후</u> 관련 분야에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 공무원 경력 기준 - <u>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u> 있었던 사람

- 또한 제5호의 ‘사회·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규제 관련 전문가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규제총괄관의 자격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안 제14조는 ▶규제총괄관의 업무범위, ▶규제총괄관에 대한 업무자료 제공, ▶직무상 획득한 정보·자료의 제3자 누설·제공, 목적 외 이용 금지, ▶규제개혁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대한 의견 요청 근거, ▶민간전문가 조례에 따른 결과 보고서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개 정 안
제14조(규제총괄관 업무 등) ① 규제총괄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주요 규제개혁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자문 2. 서울특별시 기존규제에 대한 규제정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자문 3. 불합리한 규제 발굴·검토·개선에 관한 자문 4. 서울특별시 규제입증책임제도와 관련한 자문 5. 규제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에 관한 자문

6.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자문
 7. 규제개혁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자문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 ② 시장은 규제총괄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규제총괄관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누설·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 ④ 규제총괄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규제총괄관은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이 중 규제총괄관의 업무범위는 기존의 규제개혁위원회와 비교할 때, 상당 부분이 유사한 문제가 있음.

< 규제개혁위원회-규제총괄관 간 업무범위 비교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총괄관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 서울특별시 주요 규제개혁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자문 2. 서울특별시 기존규제에 대한 규제정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자문 3. 불합리한 규제 발굴·검토·개선에 관한 자문 4. 서울특별시 규제입증책임제도와 관련한 자문 5. 규제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에 관한 자문 6.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자문 7. 규제개혁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자문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 또한 동 조례는 이미 규제개혁위원회가 행정규제개혁에 관한 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규제총괄관에게 규제개혁위원회나 실무위원회에 별도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바, 규제총괄관과 규제개혁위원회 간의 상하관계나 권한, 역할이 모호해지는 측면이 있음.

- 더욱이 규제총괄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는 2022년 9회, 2023년 8회, 2024년 7회가 개최되면서 매우 활발히 운영되고 있고, 올해에도 이미 2회 개최되어 4건의 안건을 처리한 바, 규제총괄관이 상시적인 자문을 위해 위촉된다고 하더라도 기능이 중복된다는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기 어려움.[참고자료]
- 아울러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총괄관 모두 신설되는 규제혁신기획관의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지만 규제혁신기획관 역시 서울시 규제개혁 관련 업무의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설치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옥상옥 구조로 인해 규제개혁 관련 기능과 절차가 중복되어 업무상 혼선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음.
- 다음으로 안 제15조는 규제총괄관을 임기 2년의 비상근직으로 하고, 연임 근거를 명시했으나 민간전문가 조례는 1년 단위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6조는 규제총괄관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대한 근거 규정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그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민간전문가 조례는 민간전문가의 자문료를 일반자문과 특별자문으로 구분하여 일반자문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고, 특별자문은 일반자문의 150% 이내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 개정조례안에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제17조는 규제총괄관의 해촉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1호를 제외한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는 이미 제6호에서 인용한 민간전문가 조례 제12조의 위촉 해지 사유에 포함됨.

< 개정조례안-민간전문가 조례 간 해촉사유 비교 >

개정조례안	민간전문가 조례
1. 규제총괄관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규제총괄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규제총괄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위촉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직무와 관련된 이권개입 행위를 한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역할과 책임을 태만히 하거나 그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신체·정신상 이상으로 위촉 기간 내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따라서 해당 조항은 “규제총괄관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거나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위촉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로 간략히 규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4. 종합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규제개혁 전담 조직인 규제혁신기획관 설치와 연동하여 민간전문가인 규제총괄관의 위촉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국내외 경제 불안정에 대응하여 규제개혁을 민생경제 회복의 핵심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는 서울시의 정책적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동 개정조례안은 규제총괄관의 자격기준과 업무범위를 규제개혁 위원회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능 중복 및 역할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특히 규제총괄관이 규제개혁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자문기능을 부여받은 민간전문가에게 심의 기능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이는 규제개혁위원회와의 권한 관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법령 체계 내의 위계를 훼손할 수 있음.
- 또한 규제혁신기획관 역시 규제개혁을 총괄하는 기관임에도 유사 기능이 중첩되면서 행정기구와 자문기구 간의 기능배분의 명확성과 합리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신중한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없음」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의원 전원찬성)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39
----------	------

제출년월일 : 2025년 3월 3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규제 관련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는 규제개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규제총괄관'의 자격기준 등 위촉에 관한 사항
- 나. '규제총괄관'의 업무, 수당, 해촉 등에 관한 사항
- 다. 그 밖의 문구 정비 등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행정규제기본법」
-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제외법령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
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5. 3. 13. ~ 3. 25.)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장보금(☎2133-6684)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제시책”을 “규제정책”으로, “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을 “제3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과 그밖에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10조를 제18조로 하고, 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며,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4조 및 제5조로 하고, 제2조, 제3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규제를 조례·규칙 등에 규정하는 경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2를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

제4조(종전의 제2조)의 제목“(설치 및 기능)”을“(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으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3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된다”를 “맡는다”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4조)제2항 중 “위원장이 부득이한”을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으로, “위원장이 미리”를 “위원장 중 행정1부시장이 미리”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8조)제2항 중 “된다”를 “맡는다”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

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규제총괄관 위촉)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의 전략수립과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이하 “규제총괄관”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규제총괄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민간(기업·언론·연구기관·교육기관·시민단체 등)에서 규제 관련 업무에 전문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규제 관련 석사·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에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규제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변호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5. 사회·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었던 사람

7.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4조(규제총괄관 업무 등) ① 규제총괄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주요 규제개혁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자문
2. 서울특별시 기존규제에 대한 규제정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자문
3. 불합리한 규제 발굴·검토·개선에 관한 자문
4. 서울특별시 규제입증책임제도와 관련한 자문
5. 규제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에 관한 자문
6.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자문
7. 규제개혁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자문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시장은 규제총괄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규제총괄관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누설·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④ 규제총괄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규제총괄관은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규제총괄관의 임기) 규제총괄관은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규제총괄관의 수당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규제총괄관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규제총괄관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총괄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규제총괄관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규제총괄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규제총괄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지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위촉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시의 <u>규제시책</u> 을 심의·조정하 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 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제3 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규 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규제정책</u> ----- ----- ----- ----- 제3 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과 그밖 에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에 필요 한 ----- -----.		
<u><신 설></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행정규제기본 법」 제2조를 따른다.		
<u><신 설></u>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장(이 하 “시장”이라 한다)은 규제를 조례·규칙 등에 규정하는 경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5 조 및 제5조의2를 따라야 한다.		
<u>제2조(설치 및 기능) (생 략)</u>		<u>제4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u> (현행과 같음)		
<u>제3조(구성) ①</u>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 으로 <u>구성한다</u> .		<u>제5조(구성) ①</u> ----- -----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
시장과 위원 중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 3급 이상
공무원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과 시정
의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
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
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
야 한다.

④ (생략)

<신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략)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 시장-----

-----.

③ -----

말는다. -----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의 해촉, 제척·기피·
회피)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
· 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
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
에 따른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

위원장 중 행정1부시장이 미리
-----.

제5조 ~ 제7조 (생략)

제8조(간사) ① (생략)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과장(담당관)이 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하
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
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
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신설>

제8조 ~ 제10조 (현행 제5조부터
제7조까지와 같음)

제11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말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
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서울특별시 규제총괄관 위
촉)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규제
개혁의 전략수립과 규제개혁 정
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
는 민간전문가(이하 “규제총괄
관”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
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규제총
괄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민간(기업·언론·연구기관
· 교육기관·시민단체 등)에

서 규제 관련 업무에 전문적
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
람

2. 규제 관련 석사·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에 연구경
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
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
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규
제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
거나 있었던 사람

4. 변호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5. 사회·경제 관련 단체의 임
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
에 있었던 사람

7.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 설>

제14조(규제총괄관 업무 등) ①
규제총괄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주요 규제개혁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자
문

2. 서울특별시 기존규제에 대한
규제정비계획 수립·시행에 관
한 자문

3. 불합리한 규제 발굴·검토·
개선에 관한 자문

4. 서울특별시 규제입증책임제
도와 관련한 자문

5. 규제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에 관한 자문

6.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자문

7. 규제개혁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자문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시장은 규제총괄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규제총괄관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누설·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
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④ 규제총괄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규제총괄관은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규제총괄관의 임기) 규제총괄관은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규제총괄관의 수당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규제총괄관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규제총괄관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총괄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규제총괄관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

<u>제10조</u> (생 략)	<u>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u> 3. <u>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u> 4. <u>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규제총괄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u> 5. <u>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규제총괄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6.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지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위촉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u>제18조</u> (현행 제10조와 같음)
--------------------------	--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규제총괄관’을 위촉하여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자격기준, 업무범위, 임기,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안 제13조 제2항 제6호의 자격요건인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었던 사람’을 참고 하여 인건비는 3급 연봉 상한액을 기준으로 산정
- ※ 3급(상당) 공무원 연봉 상한액(110,826천원)을 시간당 수당으로 계산(‘25년 지방 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
- 비용은 2025년 7월부터 발생하고 향후 5년간 소요비용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지출	○ 규제총괄관 수당	20,150	40,300	40,300	40,300	40,300	181,350
	○	-	-	-	-	-	-
	소계(a)	20,150	40,300	40,300	40,300	40,300	181,350
수입	○	-	-	-	-	-	-
	○	-	-	-	-	-	-
	소계(b)	-	-	-	-	-	-
□ 총 비용(a-b)		20,150	40,300	40,300	40,300	40,300	181,350

※ 수당은 3급 공무원 연봉 상한액(110,826)을 시간당 수당(52,474원*)으로 환산하여 추계

* 52,474원 = 110,826천원/2,112시간(주 40시간 × 4.4주 × 12개월)

※ 1차년도는 시행일 2025년 7월(6개월)을 기준으로 추계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국비						
	시비						
	지방세수입	20,150	40,300	40,300	40,300	40,300	181,350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20,150	40,300	40,300	40,300	40,300	181,350

5. 덧붙이는 의견 : 해당없음

6. 작성자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정선미
 법무행정팀장 박정아
 담 당 자 장보금(02-2133-6684, goguma@seoul.go.kr)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규제총괄관 총 비용(합계) ≍ 181,350천원(연평균 36,270천원)
- 산출방식 : 연간(2025~2029) 비용의 합산
 - : 40,300천원* × 4년('26.~'29) + 20,150천원('25.7.~12.)
 - ≍ 161,200천원 + 20,150천원 ≍ 181,350천원
- * 연간 규제총괄관 수당
 - = 3급 공무원 최대연봉액의 시간급 환산액 × 주2일 전일 근무가정 시 연 근무기간
 - = 52,474원 × 8시간 × 2일 × 4주 × 12개월 = 40,300천원